

# 육아휴직 기간 연차 산정방법

kt·kt노동조합



“1년의 육아휴직 후 올해 7월 복직 예정입니다. 육아휴직자는 연차 산정 방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, 어떻게 산정되나요?”

✓ 최초 육아휴직 1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정상근무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. \*단, '18.5.29일 이전 기사용자는 사용일수 차감, 아래 Q1 참고

## ➡ 육아휴직 기간 연차 산정

■ 육아휴직 시점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 (18.5.29 근로기준법 개정)

2018.5.29일 이전	2018.5.29일 이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휴직연도 소정근로일수가 8할 미만인 경우 복귀년도에 1개월 근무 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최초 육아휴직 기간 1년까지 출근으로 간주하여 정상근무 시와 동일하게 연차 부여</b></li> </ul>



Q1. 2017년에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 후 복직했습니다. 추가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연차가 어떻게 부여되나요?

☞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육아휴직 1년 중 2018. 5.29일 이전(시작일 기준) 사용한 6개월을 제외한 잔여 6개월이 출근일수로 인정받아 연차가 부여됩니다.

Q2. 7월 육아휴직 복직 후 정상 지급된 연차를 올해 다 사용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. 혹시 연차휴가 일부를 이월할 수 있나요?

☞ 네, 하반기(7.1일 이후) 복직자의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복직 시 부여된 연차의 50% 내에서 이월이 가능합니다. (매년 12월경 별도 공지)

※ 이월한 연차휴가는 익년도 6.30일까지 사용 (이월하지 않은 연차는 당해년도 사용 必)



## [기타 안내] 육아휴직 사용기준

- 사유 :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
- 기간 : 자녀당 2년 이내 (1회 분할 사용 가능) \* 부부에 각각 부여 / 동시 휴직 가능

※ 다태아 출산 시에도 동일 기준 적용 (자녀당 2년 이내)